

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3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8년 3월 13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철도과장 정기재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17조제2항 → 제126조제2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무엇인가?	○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우리말로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29호
의결 년월일	2008. 3. 20 (제142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3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17조제2항 → 제126조제2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“부천시 도시철도
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도시철도법에 의하여”를 “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”로 하고,
“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6
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
“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
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
“기타 특별회계운영”을 “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예에 의한다”를 “예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도시철도법</u>에 의하여 부천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<u>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</u>에 의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수입은 <u>다음 각호의 수입</u>으로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도시철도법의 규정</u>에 의한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<u>기타</u> 수입금</p> <p>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<u>다음 각호의 지출</u>로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 특별회계운영</u>에 수반되는 경비</p> <p>제5조(준용)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</p>	<p>부천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도시철도법</u>」에 따라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26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세입) ----- <u>다음 각 호</u>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도시철도법</u>」에 따른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그 밖의</u>-----</p> <p>제4조(세출) ----- <u>다음 각 호</u>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</u>----- -----</p> <p>제5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예에 따른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